

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7. 6. 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,052,219천원으로서 이 중 12건에 1,868,38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

○ 계(12건)	1,868,387천원
○ 2005년산 감자수매대금 군비부담금	96,000천원
○ 솔잎혹파리 긴급방제비	559,988천원
○ 7월수해피해긴급방역비(3개목)	39,300천원
○ 7월수해피해농기계수리(2개목)	11,148천원
○ 7월수해피해구호물자상하차인부임	6,468천원
○ 7월수해피해폐사축처리	6,800천원
○ 7월수해피해폐목긴급처리	12,720천원
○ 7월수해피해하수도응급복구	41,100천원
○ 7월수해피해침수가옥분뇨처리	5,808천원
○ 7월수해피해컨테이너집부대설치(2개목)	212,500천원
○ 7월수해피해응급복구비	791,763천원
○ 7월수해피해응급복구비	84,792천원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20조
-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자치법 제120조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총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

-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총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(예비비사용의 제한)

- 업무추진비·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법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.